

변 경 대 비 표

- 펀드명 : 하나 IT 코리아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-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6 년 07 월 31 일
- 변경사유
 -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규정 개정 사항 철회
- 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8.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2)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	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규정개정사항 철회	<u>(추가)</u> <u>(추가)</u> <u>5.</u> 유동성자산 <u>(추가)</u> <u>(추가)</u>	<u>5. 증권의 대여</u> <u>증권 총액의 50%이하</u> <u>6. 증권의 차입</u> <u>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이하</u> <u>7.(번호이동)</u> 유동성자산 <u>나. 금융기관에의 예치(만기 1 년</u> <u>이내인 상품에 한함)</u> 주 1) 증권의 대여 : 집합투자기구 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 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. (ETF 의 경우) ETF 매매 편의 성 증대 :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 여할 수 있으며, 대차거래에 참여 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,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 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 을 공급하고, 투자자들은 합리적 인 가격에 ETF 를 매매 나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 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 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

			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다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) 증권의 차입: 효율적 운용,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
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2)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	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규정개정사항 철회	- 동일종목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(債權)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, 비교지수 구성 종목의 경우 동일법인 또는 동일 기업집단과 관련된 증권 투자는 비교지수 내 동일법인 또는 동일 기업집단과 관련된 증권 구성비중에 2%를 더한 비중을 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가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	- 동일종목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(債權)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가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

		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. <u>다만, 비교지수 구성 종목의 경우 동일 법인 또는 동일 기업집단 관련된 증권 투자는 비교지수 내 동일법인 또는 동일 기업집단 관련된 증권 구성 비중에 2%를 더한 비중 또는 25% 중 낮은 값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</u> -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(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(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(추가)	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.(삭제) -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(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(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<u>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</u>
--	--	---	--

		나. ~마. (생략) - 파생상품투자제한 -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<u>10%</u>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<u>주 1) '동일 기업집단'이라 함은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6의 2의 기업집단을 말하며, 기업집단은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.</u> <u>1) 한 기업의 의결권 주식의 과반 이상을 보유할 것</u> <u>2) 한 기업의 재무상 혹은 운영 정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. 2) 모두 자신탁의 투자대상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, 환매조건부매도, (추가)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. 2) 모두자신탁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제한,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,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제한 및 파생상품 투자제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 1~5. (생략)	<u>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.</u> 나. ~마. (현행과 같음) - 파생상품투자제한 -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<u>100%</u>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(삭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. 2) 모두 자신탁의 투자대상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, 환매조건부매도, 증권의 차입, 증권의 대여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. 2) 모두자신탁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제한,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,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제한 및 파생상품 투자제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 1~5. (현행과 같음)
--	--	--	--

10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	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규정개정사항 철회	(추가)	<u>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 위험:</u> <u>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가</u> <u>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</u> <u>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</u> <u>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</u> <u>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</u> <u>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</u> <u>있습니다.</u>
---	--	-------------	--